

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안내

- 보건복지부령 제392호, '16.1.12.개정, '16.8.1.시행 법률 관련 -

1)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(기존 인정기준 유지)

영역	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	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
보육지식과 기술	보육학개론	유아교육(개)론, 영유아보육학
	보육과정	영유아보육과정, 유아교육과정
보육 실무	보육실습	보육현장실습, 교육실습, 학교현장실습

2) 종전기준 대상자가 개정기준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, 유사교과목 인정범위

- 적용대상 : 6개 영역,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
 - ① 2017.1.1. 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
 - ② 2018.1.1. 전 학점은행제(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)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대상 교과목 : 아동복지(론), 아동문학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

영역	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	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
보육필수	아동복지(론)	아동권리와 복지
영유아교육	아동문학	아동문학교육
	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	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

[사례]

2016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한 사람, 또는 2017년에 학점은행제(「고등교육법」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)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“아동복지(론)” 대신 “아동권리와 복지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

※ 2017.1.1. 이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 및 2018.1.1. 이후 학점은행제(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) 학위 취득자부터는 개정된 교과목명으로 이수 필수 교과목 명이 다른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따름

3) 종전기준 대상자의 「영아발달」, 「유아발달」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

- 적용대상 : 6개 영역,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

※ 2014.1.~2016.12. 까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

구분	인정기준
“영아발달”, “유아발달”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	영아발달 + 영유아발달 이수 → 인정
	유아발달 + 영유아발달 이수 → 인정
“영아발달”, “유아발달” 2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	종전기준 6개 영역 중, ‘보육필수’, ‘보육실습’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(발달 및 지도, 영유아교육, 건강·영양 및 안전,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) 에서 1과목(3학점) 이상을 추가로 이수 → 인정
	영유아발달 +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(3학점) 이상을 추가로 이수 → 인정

[사례1]

2015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하여

“영아발달(3학점)”을 이수하고 2016년에 휴학, 2017년에 복학하여 “유아발달”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, 교육과정 변경으로 “영유아발달(3학점)”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

→ “영유아발달(3학점)” 이수 시 보육필수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[사례2]

2016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가

보육필수 영역에서 “아동복지(론)(3학점), 보육학개론(3학점), 보육과정(3학점), 보육교사론(3학점)”

교과목을 이수하고 휴학, 2018년에 복학하여 “영아발달”, “유아발달”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, 교육과정 변경으로 “영유아발달(3학점)”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

→ “영유아발달(3학점)을 이수하고,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“1과목(3학점)”를 추가로 이수하여,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할 경우 인정

4) 개정기준 대상자의 「영유아발달」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

- 적용대상 : 3개 영역,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
 - ① 2017.1.1. 이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
 - ② 2018.1.1. 이후 학점은행제(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)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
영역	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	인정기준
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(필수영역)	영유아발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영아발달 + 유아발달 이수 →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</p> <p>※ 단, “영아발달”, “유아발달” 교과목 이수로 ‘보육 지식과 기술’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‘교사인성’, ‘보육지식과 기술’, ‘보육 실무’ 각 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</p>

[사례1]

2017.3월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“유아발달”, “영아발달” 교과목을 모두 이수 완료한 경우 → “영유아발달”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[사례2]

2018.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6년에 “유아발달”, “영아발달” 교과목을 모두 이수완료 한 경우 → “영유아발달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